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6. 27.

제2차 개정 2024.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전공, 학과, 학부, 계열, 단과대학 등의 모집단위(이하 ‘학과’ 라 한다)가 통합, 모집중지, 폐과되는 학과의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2.22.]

제2조(정의) ① ‘통합’ 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1개 학과로 신설되거나 통합하는 학과 중 어느 한 학과로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② ‘모집중지’란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학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모집단위가 삭제 되어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모집중지일’이란 학과의 신입생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해당 학년도 학기 개시 일을 말한다.

④ ‘모집중지교원’이라 함은 ‘모집중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4.7.24.)

⑤ ‘폐과’라 함은 학과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24.)

⑥ ‘폐과기준일’이라 함은 해당 연도 학과의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학기의 종료 일을 말한다. (개정 2024.7.24.)

⑦ ‘폐과교원’이라 함은 ‘폐과’에 해당하는 학과의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4.)

⑧ ‘소속변경’이라 함은 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의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24.)

⑨ ‘전공변경’이라 함은 모집중지교원이 재교육을 통해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의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24.)

⑩ ‘잔존학과’라 함은 모집중지된 학과로서 모집중지일부터 폐과기준일까지 존속하는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4.7.24.)

제3조(통합 및 폐과 기준) 학과의 통합 및 폐과 기준은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2.]

제4조(소속변경심의위원회) ① 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전공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

하여 소속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무연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24.)

③ 위원은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의 학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이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과의 교원 및 학생 수, 교육과정 편성 및 강의담당 시수, 전공 관련성, 교과목에 대한 강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2.22., 2024.7.24.)

⑥ 위원회는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하는 학과 교원의 소속변경) 통합하는 각 학과의 소속 교원은 통합된 학과의 교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통합된 학과로의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7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7.24.)

제6조(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제2호는 제7조 및 제7조의2를 적용하고, 제3호는 제8조를 적용한다. 다만, 모집중지 교원이 소속학과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2., 2024.7.24.)

1. 삭제 (2024.7.24.)

2. 희망하는 학과로 소속변경하거나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학과로 소속변경

3.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모집중지 교원만 해당)

[제목개정 2024.7.24.]

제7조(모집중지교원의 소속변경 절차) ① 제6조 제2호에 따른 모집중지교원의 소속변경은 1년에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속변경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② 교무연구처장은 모집중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집중지교원에게 모집이 중지되는 사실과 제11조의 의원면직에 따른 인사제도, 소속변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③ 모집중지교원이 소속변경을 원할 경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1]의 소속변경 신청서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④ 교무연구처장은 모집중지교원이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서식-2]의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 의견서 또는 [별지 서식-3]의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FIND칼리지 의견서에

따라 소속변경 희망학과의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개정 2024.7.24.)

- ⑤ 위원회는 학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별지 서식-5]의 소속변경 심사 평정표-학과- 또는 [별지 서식-6]의 소속변경 심사 평정표-FIND칼리지학부-에 의거 각각 평정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7.24.)
- ⑥ 교무연구처장은 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4.7.24.)
- ⑦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무연구처장에게 [별지 서식-7]의 재심청구서에 의거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 ⑧ 교무연구처장은 재심의 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속변경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재심의 심사기준은 제4항의 [별지 서식-7]의 재심청구서를 적용한다. 재심의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4.7.24.)
- ⑨ 소속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은 잔존학과에 잔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9조를 적용하며 소속학과의 다음 학기에 폐과되는 경우 FIND칼리지학부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전문개정 2024.2.22.]

[제목개정 2024.7.24.]

제7조의2(모집중지교원 외 소속변경 절차) ① 모집중지교원 외 교원이 소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7조의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교원의 소속학과와 소속변경을 희망한 학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속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날 소속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본인 동의서, 학과 의견(현 소속학과, 소속변경 희망학과 포함)이 확인되는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학기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1]의 소속변경 신청서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8조(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 절차) ① 모집중지교원은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을 1년에 1회 1개의 전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일이 7년 미만인 교원, 휴직자, 이미 재교육 절차를 거쳐 전공을 변경한 교원 또는 재교육 중(학위 미취득자 포함)인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전공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위취득 계획서와 [별지 서식-4]의 전공변경 신청서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전공변경을 승인받은 교원은 재교육을 통해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의 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개발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석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수

료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이 인정 한 경우에 한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재교육을 통해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였을 경우 학위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학위(예정) 증명서, 교과목개발계획서 및 [별지 서식-1]의 소속변경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다음 학기 개시(3월1일, 9월1일) 30일 전까지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의 소속변경은 위원회 심의와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교무연구처장은 제4항의 소속변경 신청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⑥ 재교육 중 폐과되어 소속을 변경할 학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교육을 완료했음에도 소속을 변경할 학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은 FIND칼리지학부로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잔존학과에 소속된다. 이 경우 잔류기간은 폐과기준일까지로 하며 폐과기준일 다음 날 FIND칼리지학부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 ⑧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시수는 이 규정 제12조를 적용하나, 총장은 해당 교원이 책임시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책임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책임시수를 감면받은 교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⑨ 재교육 후 소속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3년 이내는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24.]

제9조(모집중지교원의 잔존학과 소속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모집 중지된 소속 학과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잔류기간은 모집중지일부터 폐과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24.)

1. 제6조에 따른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별지 서식-8]의 잔존학과 잔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소속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을 위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과정 등록기한을 초과하거나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 기한을 초과한 경우
- ② 잔류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책임시수는 이 규정 제1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7.24.)
- ③ 모집중지된 학과에 잔존하는 폐과교원은 폐과기준일 6개월 전에는 언제든지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경절차는 제7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모집중지교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속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이 FIND칼리지학부로 소속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소속변경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과기준일 다음

날 FIND칼리지학부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과기준일 30일전까지 [별지 서식-1-1]의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서 및 [별지 서식-9]의 소속변경 동의서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2.,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0조(잔존학과 소속 교원의 책무) 잔존학과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학과에 소속된 교원은 폐과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잔존학과 재학생의 전과를 방해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폐과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인사) 의원면직하는 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은 「명예교수규정」 또는 「객원교수 임용규정」에 따라 명예교수나 객원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2조(책임시수 준수) 모집중지 및 폐과교원의 책임시수는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24.]

제13조(적용제외)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통합 또는 폐과되는 학과에 소속된 교원의 소속변경이 구조혁신 과정에서 결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절차에서 소속변경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소속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속학과를 정한다.

제14조(폐과교원의 직권면직) ① 총장은 폐과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직권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폐과기준일이 속한 학기까지 소속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재교육을 통한 학과 변경을 위해 학위과정에 대한 등록, 학위취득 또는 과정수료 의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심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24.]

[중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24.)]

제1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24.)]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95, 2024.02.22.)

이 규정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13, 2024.07.24.)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 (개정 2024.2.22., 2024.7.24.)

소속변경 신청서

성 명		직 급		
소속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시기	20〇〇학년도 〇학기			
변경사유				
학 력	학위	대학명	학위명(전공)	비고※
	학사			
	석사			
	박사			

상기 본인은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서 1부[별지 서식-1-1]

* 1개 학과(부)만 신청 가능

※ 비고란은 변경을 희망하는 학과 전공 일치여부를 ‘일치’, ‘유사전공’, ‘불일치’ 로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1-1] (신설 2024.7.24.)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서

성 명		직 급	
소속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학과(부)	대학		학과(부)
<u>학과 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u>			
<u>전공 관련성 및 자기계발 계획 (FIND칼리지학부의 경우 자기계발 계획만 작성)</u>			
<u>교육·연구역량 및 계획</u>			
<u>책임시수 확보 및 교과목 개설 방안</u>			
<u>기타 의견</u>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서식-2] (개정 2024.2.22., 2024.7.24.)

[중전 별지 서식-2는 별지 서식-3으로 이동 (2024.7.24.)]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부) 의견서

신청교원	성명	직급	소속학과(부)
항목(배점)		점수	비고(의견)
학과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및 정도 (40점)	40점(우수) 30점(보통) 0점(미흡)		※ 학과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및 정도 등 소속변경에 대한 추가 의견 내용 검토 및 판단
전공 일치도 및 강의가능 교과목의 적절성 (40점)	책임시수 확보 방안의 적절성 0점~40점		※ 전공 일치도 및 책임시수 충족 가능여부, 신설 예정 또는 강의가능 교과목의 적절성 등을 판단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에 대한 의견 (20점)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 종합 점수 0점~20점		※ 신청교원이 제출한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합계점수 (100점)			
종합의견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과(부)장 : (인 또는 서명)

학 장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3] (개정 2024.2.22., 2024.7.24.)

[중전 별지 서식-3은 별지 서식-2로 이동 (2024.7.24.)]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FIND칼리지 의견서

신청교원	성명		직급		소속학과	
항목(배점)			점수		비고(의견)	
FIND칼리지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및 정도 (40점)		40점(우수) 30점(보통) 0점(미흡)		※ 학과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및 정도 등 소속변경 에 대한 추가 의견 내용 검 토 및 판단		
강의 가능 교과목의 적절성 (40점)		책임시수 확보 방안의 적절성 0점~40점		※ 책임시수 충족 가능 여부, 신설 예정 또는 강의가능 교 과목의 적절성 등을 판단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에 대한 의견 (20점)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 종합 점수 0점~20점		※ 신청교원이 제출한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에 대 한 종합적 판단		
합계점수 (100점)						
종합의견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FIND칼리지 학과(부)장 : (인 또는 서명)

FIND칼리지 학 장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4] (개정 2024.2.22., 2024.7.24.)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 신청서

성 명		직 급	
소속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시기	20〇〇학년도 〇학기		
변경사유			
학력	학위	대학명	학위명(전공)
	학사		
	석사		
	박사		
학위취득 계획	학위종류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수료), <input type="checkbox"/> 박사	
	학위취득 (예정)대학		
	소재지		
	전공		
	수학기간	20 ~ 20(0년)	

상기 본인은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8] (신설 2024.7.24.)

잔존학과 잔류 신청서

성 명	직 급
소속학과(부)	대학 학과(부)
잔류신청사유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과기여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p>위와 같이 학과(부) 폐과에 따른 잔존학과 잔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 또는 서명)</p> <p>상지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서식-9] (신설 2024.7.24.)

소속변경 동의서

성 명		직 급		
소속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학과(부)	대학	학과(부)		
변경시기	20○○학년도 ○학기			
변경사유				
학력	학위	대학명	학위명(전공)	비고
	학사			
	석사			
	박사			

위 본인은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소속변경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학과 발전 및 교육·연구계획서 1부[별지 서식-1-1]

년 월 일

제출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